태국 식품 표시기준 개정 동향

2026. 11.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
기획정책본부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우리 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식품 표시기준 개정 동향을 분석하여 본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국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수출 시 부적합 관련 규제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태국은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1]를 통해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사항을 규정·관리

○ 공중보건부는 고시 제474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2판)'[2]를 정부관보에 게재('26.10.30.)하여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를 개정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경고문구·디지털 라벨 도입 등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태국 수출식품의 라벨 정비 필요

□ 주요 개정사항

○ **(라벨 표시 면제 대상)** 제조자 직접 판매 식품 등 라벨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라벨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 9종 신설

- **(개정 전)** ①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노점, 전자상거래 등), ②미가공 신선 식품, ③단순 처리 신선 식품, ④음식점·학교 등에서 서비스용으로 제조·판매하는 용기포장식품은 라벨 표시 면제
- **(개정 후)** ①에 해당하더라도 ▲식품첨가물,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 ▲생후 6~12개월 성장기용 조제식 및 유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보충식, ▲특수용도식품, ▲식이보충제, ▲추출물·영양성분·합성물질 첨가 식품, ▲경고표시 관련 별도 고시 식품, ▲제조방법, 제조기구 및 보관 관련 특정 요건 준수 식품은 라벨 표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

1)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36891.pdf)
2)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74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2판)'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135122.pdf)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품목에 참깨를 추가하고 견과류 9종을 명시, 유 항목 중 '유당'과 아황산염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고문구 대상으로 전환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① 글루텐 함유 곡물 및 그 제품 ② 갑각류 및 그 제품 ③ 알류 및 그 제품 ④ 어류 및 그 제품 ⑤ 땅콩 및 그 제품 ⑥ 대두 및 그 제품 ⑦ 유 및 그 제품(유당 포함) ⑧ 견과류 및 그 제품 ⑨ 아황산염(10 mg/kg 이상) ⑩ 조개류 및 그 제품, 오징어 및 그 제품	① 글루텐 함유 곡물 및 그 제품 ② 갑각류 및 그 제품 ③ 알류 및 그 제품 ④ 어류 및 그 제품 ⑤ 땅콩 및 그 제품 ⑥ 대두 및 그 제품 ⑦ 유 및 그 제품 ⑧ 수목 견과류 및 그 제품 ⑧-1 아몬드 및 그 제품 ⑧-2 캐슈너트 및 그 제품 ⑧-3 헤이즐넛 및 그 제품 ⑧-4 피칸 및 그 제품 ⑧-5 피스타치오 및 그 제품 ⑧-6 호두 및 그 제품 ⑧-7 브라질너트 및 그 제품 ⑧-8 마카다미아 및 그 제품 ⑧-9 잣 및 그 제품 ⑨ 조개류 및 그 제품, 오징어 및 그 제품 ⑩ 참깨 및 그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면제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주원료이고 식품명에 명시된 경우	① 좌동 ② 코덱스(Codex) 지침에 따라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잔류 단백질 함량이 코덱스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표시 면제
경고문구	알로에베라 함유 식품, 아스파탐 사용 식품 등 8종 규정	①~⑧ 좌동 ⑨ 유당 함유 식품: "유당 함유" 문구를 라벨에 추가하거나 해당 성분명에 함께 표시 ⑩ 아황산염 잔류량 10 mg/kg 이상 식품(이산화황으로 계산): "아황산염 함유" 문구를 라벨에 추가하거나 해당 성분명에 함께 표시

○ **(식품첨가물 표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식품첨가물은 주된 기능명으로 표시 가능, 용매·운반체(carrier) 및 식품 보존용 가스(packaging gas) 표시 생략 가능

- **(개정 전)**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능 분류명을 표시하되, 색소·보존료는 고유명칭 또는 INS 번호를, 향미증진제·감미료는 고유명칭을 함께 표시하며, 그 외는 기능 분류명 대신 '식품첨가물' 문구를 고유명칭 또는 INS 번호와 함께 표시 가능
- **(개정 후)** 상기 4종 식품첨가물이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경우 제조기술상 주된 기능명으로 표시 가능, 기능 분류가 '용매 또는 운반체' 및 '식품 보존용 가스'인 경우 표시 생략 가능

○ **(디지털 라벨)** 디지털 라벨(QR 코드 등)을 선택사항으로 도입, 사용 시 실물 라벨에 주요 표시사항 7개 항목(식품명, 식품등록번호, 내용량, 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문구, 소비기한) 표시

- 단, 5개 유형*은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표시사항을 실물 라벨에 표시

***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 생후 6~12개월 성장기용 조제식 및 유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보충식, 특수용도식품, 식이보충제**

○ **(기타)** 수출 전용 식품의 제조국 표시 요건 폐지, 글자 크기 규정 적용 대상을 태국어 문구로 한정, 고형량 표시 요건 삭제

□ 시행 및 경과조치

○ **(시행)** 2026년 10월 31일부터 시행

○ **(경과조치)**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에 따른 기존 라벨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 단, 라벨 표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식품 9종은 경과조치 없이 개정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 국내 수출기업 대응사항

○ (알레르기 표시) 참깨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추가, 견과류는 9종(아몬드, 호두, 잣 등)으로 구체화

- 참깨·견과류 사용 또는 혼입 우려 제품은 라벨에 알레르기 표시 여부 확인
- 기존 라벨 제품은 '28.10.30.까지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일정에 맞추어 포장지 교체 계획 마련

○ (유당·아황산염) 유당과 아황산염(10 mg/kg 이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고문구 "유당 함유", "아황산염 함유" 표시 방식으로 변경

- 유당·아황산염 함유 제품은 해당 경고문구를 라벨에 추가로 표시하거나 원재료명 옆에 함께 표시하도록 라벨 수정

○ (디지털 라벨) QR코드 등 디지털 라벨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도입

-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더라도 7개 항목(식품명, 식품등록번호, 내용량, 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문구, 소비기한)은 실물 라벨에 표시 필요
- 단, 영유아용 식품, 특수용도식품, 식이보충제 등 5개 유형은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표시사항을 실물 라벨에 표시
- 디지털 라벨에는 모든 표시사항을 담고, 상시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관리

붙임1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및 제474호 조문 대비표

구분	개정 전(제450호)	개정 후(제474호)
서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개정~~추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2항. 본 고시에서 “용기포장식품”이란 판매를 위하여 용기에 포장한 식품을 의미함. “소비기한”이란 라벨에 명시된 보관 조건 하에서 식품의 품질이 종료되는 날짜를 의미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 “품질유지기한”이란 라벨에 명시된 보관 조건 하에서 식품이 양호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의미하며, 명시된 날짜 이후에는 식품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날짜 이후에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 “개별 포장”이란 식품을 원래의 용기에서 소포장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식품의 제조, 혼합, 가공은 포함하지 않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란 체내에 유입되면 비정상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는 어떠한 위해도 없으나 해당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 사람에게만 위해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포함함. “색소”란 식품첨가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 색소를 의미함.	2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2항의 “색소” 정의 아래에 다음의 정의를 추가함. ““추출물 첨가 식품”이란 식물, 동물 또는 버섯으로부터 용매를 사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 또는 분리하여 얻은 유효성분(예: 마리골드 추출물)을 첨가한 식품을 의미함. 단, 채소를 물에 끓이는 방식의 물 추출은 포함하지 않음. “영양성분 첨가 식품”이란 천연 유래 추출, 미생물 발효, 효소 사용 또는 화학적 합성으로 얻은 영양성분(예: 아미노산, 비타민 및 무기질)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첨가한 식품을 의미함. 단, 구성성분을 통해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식품(예: 단백질을 제공하는 우유·유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합성물질 첨가 식품”이란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합성물질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원료(예: 합성 카페인)를 첨가한 식품을 의미함. 단, 식품첨가물(예: 식용색소, 감미료)은 포함하지 않음.”
라벨 표시 면제 식품	3항. 다음의 식품을 제외한 용기포장식품은 라벨을 표시해야 함. (1)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제조자가 제조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예: 행상, 노점,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	3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3항의 내용을 폐지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함. “3항. 다음의 식품을 제외한 용기포장식품은 라벨을 표시해야 함. (1)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제조자가 제조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예: 행상, 노점 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판매 ~~등~~) 단, 다음의 식품은 (1)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본 고시와 관련 공중보건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ㄱ) 식품첨가물 (ㄴ)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 (ㄷ) 생후 6~12개월 성장기용 조제식 및 유아용 조제식 (ㄹ) 영유아용 보충식

구분	개정 전(제450호)	개정 후(제474호)
		(ㅁ) 특수용도식품 (ㅂ) 식이보충제 (ㅅ) 추출물 첨가 식품, 영양성분 첨가 식품 및 합성물질 첨가 식품 (ㅇ) 공중보건부 고시에서 경고문구 표시를 별도로 규정한 그 밖의 식품 (ㅈ) 식품의 제조방법, 제조기구 및 보관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
	(2)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신선 식품 (3) 껍질 제거, 해체, 손질 또는 그 밖의 크기 축소 방법을 거친 신선 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냉장 또는 비냉장 상태일 수 있으며 해당 신선식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용기에 담긴 것 (4) 음식점, 레스토랑, 호텔, 학교, 교육기관, 병원 및 이와 유사한 장소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조·판매하는 용기포장식품(구매자에게 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포함) (1), (2), (3) 및 (4)에 따른 식품이 식품등록번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2)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신선 식품 (3) 껍질 제거, 해체, 손질 또는 그 밖의 크기 축소 방법을 거친 신선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냉장 또는 비냉장 상태일 수 있으며 해당 신선식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용기에 담긴 것 (4) 음식점, 레스토랑, 호텔, 학교, 교육기관, 병원 및 이와 유사한 장소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조·판매하는 용기포장식품(구매자에게 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포함) ~~(1), (2), (3) 및 (4)~~첫 단락에 따른 식품이 식품등록번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첫 단락에 따른 식품이 라벨을 표시하는 경우 4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5항 (9)의 조건도 준수해야 함.”
식품 라벨 표시 언어	5항.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는 태국어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청이 문구 기재를 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다음의 세부 사항을 표시하는 문구가 있어야 함.	4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5항의 내용을 폐지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함. “5항.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는 태국어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청이 문구 기재를 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어 문구에는 최소한 다음의 세부 사항을 표시하는 문구가 있어야 함.
고형물 표시	(4) 미터법에 따른 식품의 양 (4.1) 고체 상태의 식품은 순중량을 표시함. 단, 순중량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수를 표시함. (4.2) 액체 상태의 식품은 순부피를 표시함. (4.3) 반고체·반액체 상태 또는 그 밖의 상태인 식품은 순중량 또는 순부피로 표시할 수 있음.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고형물 중량이 규정된 식품의 경우에는 고형물 중량도 표시함.	(4) 미터법에 따른 식품의 양 (4.1) 고체 상태의 식품은 순중량을 표시함. 단, 순중량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수를 표시함. (4.2) 액체 상태의 식품은 순부피를 표시함. (4.3) 반고체·반액체 상태 또는 그 밖의 상태인 식품은 순중량 또는 순부피로 표시할 수 있음.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고형물 중량이 규정된 식품의 경우에는 고형물 중량도 표시함.~~

구분	개정 전(제450호)	개정 후(제474호)
알레르기 유발물질	(6)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한 경우 “식품 알레르기 정보: ..... 함유”, 제조공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 정보: ..... 함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경우에 따라 표시함(빈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 유형 또는 종류 기재). 이때 “식품 알레르기 정보”라는 문구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함. “식품 알레르기 정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 함유” 또는 “..... 함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명확히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함. 첫 단락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유형 또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6.1) 글루텐 함유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또는 이들의 교배종 및 상기 글루텐 함유 곡물 제품. 단, 다음은 제외함. (ㄱ) 밀 유래 포도당 시럽 또는 덱스트로오스 (ㄴ) 밀 유래 말토덱스트린 (ㄷ) 보리 유래 포도당 시럽 (ㄹ) 곡류 증류 알코올 (6.2) 갑각류(예: 게, 새우, 갯가재, 바닷가재 등) 및 갑각류 제품 (6.3) 알류 및 알류 제품 (6.4) 어류 및 어류 제품. 단, 비타민 및 카로티노이드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어류 젤라틴은 제외함. (6.5) 땅콩 및 땅콩 제품 (6.6) 대두 및 대두 제품. 단, 다음은 제외함. (ㄱ) 정제 공정을 거친 대두 유래 유지류 (ㄴ) 대두 유래 혼합 토코페롤, d-α-토코페롤 또는 dl-α-토코페롤, d-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또는 dl-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 d-α-토코페릴산 숙시네이트 (ㄷ) 대두유 유래 피토스테롤 및 피토스테롤 에스테르 (ㄹ) 대두 유래 식물성 기름의 스테롤로부터 제조한 식물성 스타놀 에스테르	(6)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한 경우 “식품 알레르기 정보: ..... 함유”, 제조공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 정보: ..... 함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경우에 따라 표시함(빈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 유형 또는 종류 기재). 이때 “식품 알레르기 정보”라는 문구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함. “식품 알레르기 정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 함유” 또는 “..... 함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명확히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함. 첫 단락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유형 또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6.1) 글루텐 함유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또는 이들의 교배종 및 상기 글루텐 함유 곡물 제품. 단, 다음은 제외함. (ㄱ) 밀 유래 포도당 시럽 또는 덱스트로오스 (ㄴ) 밀 유래 말토덱스트린 (ㄷ) 보리 유래 포도당 시럽 (ㄹ) 곡류 증류 알코올 (6.2) 갑각류(예: 게, 새우, 갯가재, 바닷가재 등) 및 갑각류 제품 (6.3) 알류 및 알류 제품 (6.4) 어류 및 어류 제품. 단, 비타민 및 카로티노이드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어류 젤라틴은 제외함. (6.5) 땅콩 및 땅콩 제품 (6.6) 대두 및 대두 제품. 단, 다음은 제외함. (ㄱ) 정제 공정을 거친 대두 유래 유지류 (ㄴ) 대두 유래 혼합 토코페롤, d-α-토코페롤 또는 dl-α-토코페롤, d-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또는 dl-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 d-α-토코페릴산 숙시네이트 (ㄷ) 대두유 유래 피토스테롤 및 피토스테롤 에스테르 (ㄹ) 대두 유래 식물성 기름의 스테롤로부터 제조한 식물성 스타놀 에스테르

구분	개정 전(제450호)	개정 후(제474호)
	(6.7) 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단, 락티톨은 제외함.	(6.7) 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단, 락티톨은 제외함.
	(6.8)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예: 아몬드, 호두, 피칸 등)	(6.8) ~~견과류~~수목 견과류 및 ~~견과류~~수목 견과류 제품~~(예: 아몬드, 호두, 피칸 등)~~으로서 다음과 같음. (ㄱ) 아몬드 및 아몬드 제품 (ㄴ) 캐슈너트 및 캐슈너트 제품 (ㄷ) 헤이즐넛 및 헤이즐넛 제품 (ㄹ) 피칸 및 피칸 제품 (ㅁ) 피스타치오 및 피스타치오 제품 (ㅂ) 호두 및 호두 제품 (ㅅ) 브라질너트 및 브라질너트 제품 (ㅇ) 마카다미아 및 마카다미아 제품 (ㅈ) 잣 및 잣 제품
	(6.9) 10 mg/kg 이상의 아황산염	~~(6.9) 10 mg/kg 이상의 아황산염~~
	(6.10) 패류·오징어 및 패류·오징어 제품	(6.10) 패류·오징어 및 패류·오징어 제품
		(6.11) 참깨 및 참깨 제품
	단, (6)의 내용은 주요 성분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식품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의 명칭을 명확히 표시한 식품(예: 우유, 볶은 땅콩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단, (6)의 내용은 주요 성분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식품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과민반응 유발물질~~의 명칭을 명확히 표시한 식품(예: 우유, 볶은 땅콩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지침에 따라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잔류 단백질량이 Codex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포함함.
식품첨가물 정보 표시	(7) 식품첨가물 정보 표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식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를 통해 식품첨가물이 이행되거나,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이 나타나는 양으로 식품의 성분이 되는 경우에는 기능 분류를 표시함. 보존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및 색소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문구도 표시함. (7.1) "색소"의 기능 분류명 다음에 고유명칭 또는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INS for Food Additives에 따른 번호를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 천연색소 또는 합성색소인지 색소의 종류를 명시할 수 있음. (7.2) "보존료"의 기능 분류명 다음에 고유명칭 또는 International	(7) 식품첨가물 정보 표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식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를 통해 식품첨가물이 이행되거나,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이 나타나는 양으로 식품의 성분이 되는 경우에는 기능 분류를 표시함. 보존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및 색소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문구도 표시함. (7.1) "색소"의 기능 분류명 다음에 고유명칭 또는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INS for Food Additives에 따른 번호를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 천연색소 또는 합성색소인지 색소의 종류를 명시할 수 있음. (7.2) "보존료"의 기능 분류명 다음에 고유명칭 또는 International

구분	개정 전(제450호)	개정 후(제474호)
	Numbering System: INS for Food Additives에 따른 번호 (7.3) 향미증진제 및 감미료의 경우 기능 분류명 다음에 고유명칭 보존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및 색소가 아닌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능 분류명 대신 “식품첨가물”이라는 문구를 고유명칭 또는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INS for Food Additives에 따른 번호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	Numbering System: INS for Food Additives에 따른 번호 (7.3) 향미증진제 및 감미료의 경우 기능 분류명 다음에 고유명칭 보존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및 색소가 아닌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능 분류명 대신 “식품첨가물”이라는 문구를 고유명칭 또는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INS for Food Additives에 따른 번호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 보존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및 색소의 기능 분류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 “식품첨가물”이라는 문구 대신 제조기술상의 목적과 필요에 따른 주된 기능에 해당하는 다른 기능 분류를 표시하며, 사용량은 해당 주요 기능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단, 기능 분류가 용매 또는 운반체(Carrier) 및 식품 보존용 가스(Packaging gas)인 식품첨가물은 (7)에 따른 정보도 표시할 수 있음.
디지털 라벨	-	5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제5/1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1항. 식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디지털 라벨로 라벨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고시에서 규정한 정보를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며, 디지털 라벨을 통한 식품 관련 정보 표시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하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함. 단, 5항 (1), (2), (4), (5), (6), (9) 및 (10)에 따른 라벨 표시는 용기에 표시해야 함. 또한 다음의 식품이 디지털 라벨로 라벨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항에 따라 빠짐없이 용기에 표시해야 함. (1)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 (2) 생후 6~12개월 성장기용 조제식 및 유아용 조제식 (3) 영유아용 보충식 (4) 특수용도식품 (5) 식이보충제”
수출 식품 라벨	7항. 수출용으로 제조한 식품의 라벨은 어떠한 언어로든 표시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다음을 명시해야 함. (1) 제조자 국가 (2) 식품등록번호, 식품 제조시설 번호 또는 제조시설 명칭·주소 중 하나	6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7항의 내용을 폐지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함. “7항. 수출용으로 제조한 식품의 라벨은 어떠한 언어로든 표시할 수 있으나 최소한 ~~(1) 제조자 국가 (2)~~ 식품등록번호, ~~또는~~ 식품 제조시설 번호 또는 제조시설 명칭·주소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함.”

<table>
<tr><th>구분</th><th>개정 전(제450호)</th><th>개정 후(제474호)</th></tr>
<tr><td>경고
문구</td><td>–</td><td>7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첨부목록의 5항 (13)에 따라 추가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문구에 9번, 10번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table><tr><th>식품</th><th>경고문구 또는 기타 문구</th></tr><tr><td>9. 유당 함유 식품</td><td>“유당 함유” 문구를 라벨에 추가하거나 해당 성분명에 함께 표시</td></tr><tr><td>10. 아황산염 잔류량 10 mg/kg 이상 식품(이산화황으로 계산)</td><td>“아황산염 함유” 문구를 라벨에 추가하거나 해당 성분명에 함께 표시</td></tr></table></td></tr>
<tr><td>글자
크기</td><td>15항. 라벨의 문구는 명확히 보이고 읽기 쉬워야 하며, 글자 크기는 라벨 면적에 비례하여야 하고 다음을 준수해야 함.
(1) 5항 (1)에 따른 식품명은 글자 높이가 2 mm 이상이어야 하고, 명확히 읽을 수 있으며 라벨 면적에 비례하고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4항을 준수해야 함. 단, 면적이 35 cm² 미만인 라벨은 식품명을 높이 1 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함.
(2) 5항 (2)에 따른 식품등록번호의 글자 높이는 식품의약품청 규정을 준수함.
(3) 5항 (4), (5), (6) 및 (9)에 따른 문구의 글자 높이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음.
(3.1) 면적이 100 cm² 이하인 라벨은 1 mm 이상. 단, 전체 면적이 35 cm² 미만인 식품 라벨의 경우 식품 포장에 성분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3.2) 면적이 100 cm²를 초과하는 라벨은 1.5 mm 이상
(4) 공중보건부 고시로 별도로 규정한 식품의 영양성분 관련 문구, WHO 기준 대비 영양성분표, 조리방법, 영양라벨, GDA 방식의 라벨, 영양강조 표시, 판매촉진에서의 영양가 사용 및 판매촉진에서의 소비자군에 대한 문구는 글자 높이가 1 mm 이상이어야 함.
(5) 제5항 (1), (4) 및 (9)에 따른 문구는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표시함.</td><td>8항.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15항의 내용을 폐지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함.
“15항. 라벨의 태국어 문구는 명확히 보이고 읽기 쉬워야 하며, 글자 크기는 라벨 면적에 비례하여야 하고 다음을 준수해야 함.
(1) 5항 (1)에 따른 식품명은 글자 높이가 2 mm 이상이어야 하고, 명확히 읽을 수 있으며 라벨 면적에 비례하고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4항을 준수해야 함. 단, 면적이 35 cm² 미만인 라벨은 식품명을 높이 1 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함.
(2) 5항 (2)에 따른 식품등록번호의 글자 높이는 식품의약품청 규정을 준수함.
(3) 5항 (4), (5), (6) 및 (9)에 따른 문구의 글자 높이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음.
(3.1) 면적이 100 cm² 이하인 라벨은 1 mm 이상. 단, 전체 면적이 35 cm² 미만인 식품 라벨의 경우 식품 포장에 성분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3.2) 면적이 100 cm²를 초과하는 라벨은 1.5 mm 이상
(4) 공중보건부 고시로 별도로 규정한 식품의 영양성분 관련 문구, WHO 기준 대비 영양성분표, 조리방법, 영양라벨, GDA 방식의 라벨, 영양강조 표시, 판매촉진에서의 영양가 사용 및 판매촉진에서의 소비자군에 대한 문구는 글자 높이가 1 mm 이상이어야 함.
(5) 제5항 (1), (4) 및 (9)에 따른 문구는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표시함.”</td></tr>
<tr><td>시행
일자</td><td>18항. 본 고시는 정부관보 게재일의 익일부터 시행함.</td><td>1항. 본 고시는 정부관보 게재일의 익일부터 시행함.</td></tr>
</table>

구분	개정 전(제450호)	개정 후(제474호)
유예 기간	–	9항. 10항의 적용 하에, 본 고시로 개정된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용기포장식품의 라벨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속 판매할 수 있음. (1)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를 준수해야 함. (2) 본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0항. 3항 (1)의 두 번째 단락 (ㄱ)~(ㅈ)에 따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은 본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된 2024년 6월 19일 자 공중보건부 고시 제450호 '용기포장식품의 라벨 표시'를 준수하여야 함.

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 043-719-1752)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해예측센터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 02-744-8166)